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증력지대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156
----------	------

2019년 12월 1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9년 10월 16일
- 다. 회부일 : 2019년 10월 22일
- 라. 상정일 :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9년 11월 2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청년청장 김영경)

가. 제안이유

- 동대문구 지역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용공간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제20조, 「서울특별시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에 따라
- 청년사업, 공간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운영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의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 청년공간 설치·운영에 대한 민간의 경험에 기반하여 민간 자원과의 적극적 연계 협력을 추진,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3) 위탁사무 내용(위탁 대상 사무, 범위 등)

○ 위탁기간 : 3년(2019.1.1.~2021.12.31.)

○ 위탁업무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시설 관리·운영 일체

① 청년역량 강화 사업

- 청년활동 전문 분야별 직무 노하우 공유 및 학습교육

-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이슈 연구실행 지원

②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지역 청년 커뮤니티 모집 및 활동 지원

③ 청년센터(Y.C : Youth Center) 기능 수행

- 청년 지원 사업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종합 상담 지원

· 공공정책 서비스에 연결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집적 및 안내

- 지역 특화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청년 지원 전문 인력 청년 매니저 양성
- 지역 기성자원(주민센터, 복지관)·청년단체 등 민간자원연계 체계 구축 등

④ 무중력지대 동대문 시설 관리·운영

- 건축물 시설 관리·운영
- 사무기기 및 비품 구매·관리

⑤ 무중력지대 홍보 사업

- 무중력지대 동대문 사업 홍보 및 홍보물 제작

- 소요예산 : 490백만원(2020년도 예산편성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구」 운영	
위 치 · 규 모	동대문구 전농동 588-1(지상3층), 476m ²	
지 원 시 설	코워킹 스페이스, 휴게공간, 공유부엌, 상담실, 회의실	
위 치 도		

5) 민간위탁기간

- 3년(2019.1.1.~2021.12.31.)

6)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신규위탁)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0년 소요예산 : 490백만원(2020년도 예산편성 추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동대문구 지역 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무중력지대 동대문을 조성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무중력지대 동대문 현황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구」 운영
위 치 · 규 모	동대문구 전농동 588-1(지상3층), 476㎡
지 원 시 설	코워킹 스페이스, 휴게공간, 공유부엌, 상담실, 회의실
위 치 도	

- 본 동의안은 3년 동안(2020. 1. ~ 2022. 12.) 무중력지대 동대문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임.

위탁 운영 방안
○ 위탁기간 : 2020. 1. ~ 2022. 12.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사업비 : 연간 490백만원(2020년도 예산편성 추진) ※ 인건비 203백만원, 운영비 67백만원, 사업비 220백만원
○ 위·수탁 사무
- 청년 수요에 맞는 '종합 상담 지원체계' 구축(정책 게이트웨이 구축)
- 정부·지자체 '청년지원사업 정보 집적' 및 대민 안내·홍보

- 청년 '생활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청년 특화사업'
- 지원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청년 매니저 양성' 과정 운영
- 지역 기성자원-청년단체 등 '민간 자원연계' 체계 구축
- 청년센터(Y.C : Youth Center) 기능 수행
- 청년 지원 사업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종합 상담 지원
 - 공공정책 서비스에 연결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집적 및 안내

나. 무중력지대 동대문 관련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

- 무중력지대는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활동연계를 통해 청년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들의 소통 및 모임의 공간으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무중력지대 대방, G밸리, 도봉 등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이와 유사한 청년시설로 청년허브(은평구 서울혁신파크 소재) 및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등 청년시설을 비교해보면, 사업내용면에서는 청년 활동생태계 구축 등으로 유사하나, 이용대상과 운영시간* 등은 차이가 있으며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청년교류공간은 365일, 24시간 개방체제로 운영하였으나, 당초 조성목적과 달리 이용자 저조 등으로 2018년 6월부터 운영시간을 변경함(평일 10시-10시).

〈청년공간지원 등 유사시설 비교〉

구 분	청년교류공간	무중력지대	청년허브
설 치 근 거	市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市 청년기본조례 제19조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市 청년기본조례 제18조 (청년허브의 설치·운영)
운 영	민간위탁	민간위탁	민간위탁
조 성 규 모	거점(1개소)	서울시, 자치구 구별	市の 중간지원 조직

구 분	청년교류공간	무중력지대	청년허브
주 이용 대상	청년활동 그룹 ※ 국내·외 청년	청년(단체)	청년(단체), 일반시민
이용 시간	당초 : 365일, 24시간 운영 ⇒ 변경 : 월~토 10:00~22:00 (2018년 6월부터)	월~금 : 10:00~22:00 토 : 10:00~16:00(대방)	월~일 : 10:00~22:00
주요 공간 설	활동지원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휴게 카페, 나눔부엌 등)	활동지원공간 (강의실, 세미나실, 휴게 카페, 나눔부엌 등)	다목적홀, 창문카페, 휴게공간, 세미나실 등
사업 내용	- 청년활동생태계 구축협력서비스 제공 - 청년활동 그룹 간 교류 및 역량강화 - 청년문제 해결 프로젝트 및 연구지원 등	- 청년활동생태계 구축협력서비스 제공 - 청년 커뮤니티 확대 및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 등	- 청년 진로모색 및 학습경험 지원제공 - 청년 자립공존 및 공간·활동 지원 - 혁신사례 발굴 및 공유, 청년정책 의제발굴 등

- 민간위탁은 행정조직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청년청은 무중력지대 동대문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로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와 제20조 및 「서울특별시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를 제시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① 시장은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적으로 정례화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8.>
	② 시장은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정에 반영된 청년 제안 정책 등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8.>
	③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 1. 7.>

- 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6. 1. 7.>
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 대상 선정 기준·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수립·시행
 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 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 보장과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의 사용료의 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5.10.8.>

④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0.8.>

1. 서울에서 활동하는 만19세~39세까지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울특별시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간위탁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2020년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 사업계획’에 따라 무중력지대 4개소를 신규 조성 및 위탁¹⁾하려는 것으로,

- 청량리역 광장에 조성 예정이며, 청년청은 조성부지에 하수관거 및 지하 환승로가 위치하여 기초공사 구조 검토 및 기본설계안을 재검토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1) 무중력지대 신규 조성 및 위탁(4개소) 개요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경과 〉

□ 추진근거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33호, '15.11. 9.)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추진목표

- 2022년까지 25개 전 자치구 청년활력공간 1개소 설치
- 설치개소(누계) : 10개('18년)→ 14개('19년)→ 18개('20년)→ 22개('21년)→ 26개('22년)

※ 은 평 : 2개소(서울혁신파크 내 / '13.4월 청년허브, '15.12월 청년청)

□ 추진경과

- 2018.8.24 청년공간 설치·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유휴공간(건물, 부지) 현황자료 제출(청년청→동대문구)
- 2018.9.4 청년활력공간 사업 관련 현황자료 제출(동대문구→청년청)
- 2018.9~10. 청량리역 선상광장 사용 협의
(동대문구↔ 코레일 수도권동부분부, 청량리역 역장)
- 2018.10.1. 현장방문 조사(청년청)
- 2018.10.30. 2018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심의결과 : 적정)
- 2018.10~2019.2. 청량리역 광장 사용협의
(동대문구↔한화역사(주), 코레일 수도권 동부분부,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 청량리역사)
- 2019.2.14 무중력지대 조성 관련 업무협의(청년청↔동대문구)
- 2019. 2. 20. '2019년 청년활력공간 조성계획 수립'
- 2019. 4. 9. 청량리역 광장 토지사용 승인(한국철도시설공단→동대문구)
- 2019. 5. 20. 무중력지대 동대문 조성계획 수립
- 2019. 6.~10. 무중력지대 동대문 신축공사 설계용역 시행
- 2019. 8. 8. '2020년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운영 사업계획 수립'

대 상		소 재 지	공간규모	운영예산(안)
서울청년센터- 무중력지대 (가칭)	성 동	성동구 옥수동 204-4 (지상1층)	350㎡	490백만원
	동 대 문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지상1층)	448㎡	490백만원
	강 북	강북구 번동 410-5 (지상2층)	406㎡	490백만원
	노 원	노원구 상계동 65-41 (지상1층)	400㎡	490백만원

- 2019. 8.13. 서울청년센터-무중력지대(가칭) 4개소 신규 민간위탁 추진 계획

□ 향후계획

- 무중력지대 동대문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19.10~11.
- 무중력지대 동대문 공사진행 : '19.11~12.
- 무중력지대 동대문 개관·운영 : '20.3월~

- 청년청은 청년대상 시설운영 또는 커뮤니티 활성화에 대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기관(단체)을 선정·위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현장성, 전문성 및 창의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무중력지대의 조성은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마련을 통해 다양한 참여 및 소통욕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부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시 무중력지대 동대문의 민간위탁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무중력지대 동대문 조성 예정지인 청량리역 광장은 유동인구가 많아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 청년공간으로만 한정할 경우 오히려 다른 계층의 주민들의 이용이 제약되거나 소외되는 측면은 없는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따라서, 본 입지가 청년만을 위한 공간 조성 부지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둘째, 청량리역 광장은 국유지로서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연 1천 4백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유상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임.

국유재산 유상 무상 사용허가서

성 명 : 동대문구청장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204-83-00037

주 소 : (0256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천호대로145(용두동 39-9)

허가재산의 표시

재산 소재지	번지	지목	지적면적(m ²)	허가면적(m ²)	사용용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철	102,576	200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조성

부지 사용권 부여 및 가설건축물 축조

이 허가서는 부지 사용권만 부여한 것으로, 가설건축물, 공작물, 비닐하우스 등을 건축(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용인은 공단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신고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하며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에 따른 책임(행정처분 포함)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붙여 그 사용·수익(이하 "사용"이라 한다)을 허가합니다.

2019년 8월 일

재산관리담당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



허 가 조 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청년공간(무중력지대) 조성"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년 08월 20일부터 2024년 08월 19일까지로 한다.

- 동 조성지는 '청량리역 광장'인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으며,

- 무중력지대 동대문 조성시 동대문구 청년들이 동 공간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큼에도 자치구 부지의 ‘무상사용허가’가 아닌 국유지의 유상사용은 타 자치구에 비하면 자치구의 협조 등이 미흡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더욱이, 민간위탁금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건 모두 4억 9천만원으로 획일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동대문구 국유지 임차예산은 편성하지 않은 채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음.
- 이러한 청년청의 안전 제출은 동 사업에 대한 성의와 열의가 부족한 무책임한 안전 제출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 셋째, 동대문 무중력지대는 컨테이너(경량철골조)로 제작되는 만큼 관련 법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예방 등에 취약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검토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넷째,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사업을 매번 민간위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시 참여기관(단체)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수행할 단체가 많지 않은 등의 사유로 재계약, 재위탁이 빈번한 점을 살펴볼 때
 - 동 사업이 민간에서 경쟁력 있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장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 되는 상황이라고 하겠음.
- 다섯째, 2019년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무중력지대 설치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이견이 많고, “당위성은 떨어지고 획일적인 사업이라는 평가”와 아울러 향후 “중년센터”도 생기는 것인지의 우려가 있음에도 청년청은 “저희가 지금 모델 확정을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는바, 무중력지대의 양적 확대만이 목적이 아닌 서울시민과 청년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000 위원〉

- 그리고 지자체에다가 이것을 위탁하건 본인들이 하건 어떻게 하던 간에 중요한 것은 무중력지대의 특성을 살려서 뭔가 뚜렷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그에 따라서 예산도 차별화성을 오히려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억 9,000이라는 것을 똑같이, 그냥 돈 쓰기 위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같이 경쟁도 좀 부쳐서, 통합적으로 정보 공유도 하면서 새로운 것을 해서 뭔가 실효성이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경쟁도 좀 부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장기적인 로드맵 같은 것도 전혀 나타나지 않고 나눠주기식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앞으로 이런 것을 배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000 위원〉

- 실제로 주요 추진사업들을 보면, 000 위원님 말씀에 좀 얹어서 마음건강, 주거, 노동, 일자리, 지역 커뮤니티, 다른 센터에서도, 창업센터나 이런 데에서도 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눈에는 이런 것이 ‘청년’이라는 이름만 달려 있을 뿐이지 너무 중복적인 것들이 부서별로 무분별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담당 공무원1 (청년청)〉

-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번에 하는 것도 권역별로 범주를 한 군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기능들을, 예를 들면 기성 민간시설들, 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민간 자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들

과 같이 연계를 해서 서로 전달체계를 저희가 확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으로, 기능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1 (청년청)〉

- 그래서 서두에 제목을 가칭으로 한 이유도 저희가 모델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확정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들을 만들 겁니다.

〈000 위원〉

- 그러면 청년센터도 생길 수 있나요?

〈중략〉

- 따라서, 무중력지대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지역적 설치 기준이나 원칙없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향후 추가적인 청년공간 조성시 청년 정주인구, 유동인구 및 유사시설 조성현황, 청년 수요 등 실효성 있는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입지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서울시에서 모든 구에 청년공간을 설치·조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시의 과도한 재정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와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은 없는지 등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여섯째, 향후 무중력지대를 청년센터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바, 청년을 위한 종합 지원공간으로서 그 정체성과 조성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특히, 청년관련 유사 공간 및 지원센터와의 통합 가능성, 역할과 기능의 협업 등에 대한 상위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자치구 청년일자리센터 등과 중복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무중력지대가 향후 청년지원 및 청년활동의 통합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경우 이미 조성되어 있는 청년일자리 카페나 청년 창업센터 등과 유사·중복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청년의 문제는 비단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책임도 크다고 할 것이고 향후 국가의 사무도 일부 수행하려고 하는바 국비 확보 노력 등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무중력지대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바, 민간위탁시에는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점검을 충실히 하여 민간위탁기관이 책임감있게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무중력지대에 대한 여론 조사²⁾결과, 청년공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조사대상 전체의 11.3%에 불과하였고, 무중력지대별 프로그램 인지율 및 참여경험이 낮았으며(한번이라도 프로그램 참여경험 있는 비율: 17.0%), 공간분리, 운영시간, 타인의 시끄러움, 커뮤니티 활동 부족 등 운영 측면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나타낸 바 있음.

2) <2019년 청년공간 인지도 및 만족도에 대한 여론 조사 실시>

- 기 간 : 2019.8.~9.
- 조사기관 : 서던포스트
- 조사규모 : 1,500명(서울시 거주 일반시민 및 청년(15세~34세))
- 조사방법 : 전화 + 면접조사
- 조사내용

- 또한, 동 사업이 예산낭비, 실효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으며, 청년공간이 서울시 청년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나타난바,
- 청년 공간 무중력지대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유익한 사업이 되도록 정교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며, 소수의 청년이 독점하는 시설이 아닌 서울시 전체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 되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도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아울러, 민간위탁 실시 이후에는 매년 5억원 규모의 민간위탁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바, 동 사업이 예산 투입 대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다 종합적이고 치밀한 사업 구상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도 예산 의결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 제출한 것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위배되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는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조례 개정 등을 포함한 청년청의 책임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구분	조사항목
서울시 거주 청년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도, 인지경로 - 방문 목적(이용 경험자) 인식 - 서울시 청년문제 해결 도움 여부에 대한 인식 - 청년공간에 대한 부정인식 -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청년공간 프로그램 - 서울시 청년정책별 인지도 및 효과 인식
서울시 청년공간 이용자 (현장 면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 동행자 - 이용목적 - 공간제공, 운영 만족도 및 각 시설별 프로그램 만족도 - 전반적 만족도, 재방문 의향, 타인추천 의향 - 개선 및 건의사항

〈민간위탁금 산출기초〉

□ 예산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출금액	비 고
총 계	490,000천원	
인건비(향후 인건비는 조정될 수 있음)	202,954천원	
센터장	3,615천원*1명*12개월=43,380천원(수당포함)	'19년 무중력시대 인건비 x 3%증액
매니저(상담 전담 2명 포함)	3,109천원*4명*12개월=149,232천원(수당포함)	
4대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고용보험,산재보험)	10,342천원	
운영비	66,732천원	
공공요금 및 세제	2,066천원*12개월 = 24,792천원	'19년 무중력시대 운영비 x 3%증액
우편통신비	322천원*12개월 = 3,864천원	
임차료(각종 장비 임차)	604천원*12개월 = 7,248천원	
수선유지비(시설관리)	399천원*12개월 = 4,788천원	
자산취득비(장비·물품 구입)	302천원*12개월 = 3,624천원	
용역비(청소, 주말·대체운영)	1,404천원*12개월 = 16,848천원	
회의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위원회 운영 등)	202천원*12개월 = 2,424천원	
소모품(사무용품, 복사지 등)	161천원*12개월 = 1,932천원	
여비(시내·외 출장)	101천원*12개월 = 1,212천원	
사업비	220,314천원	
1) 종합상담지원체계 구축	45,600천원	
ㄱ. 분야별 전문 상담 진행	100천원*30회*12개월 = 36,000천원	
ㄴ. 분야별 교육, 세미나 운영	200천원*4회*12개월 = 9,600천원	
2) 청년지원사업 정보 시스템 구축 및 홍보	30,000천원	
ㄱ. 청년지원사업 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	20,000천원*1식 = 20,000천원	
ㄴ. 청년지원사업 정보 시스템 관리 및 홍보	10,000천원*1식 = 10,000천원	
3) 생활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51,000천원	
ㄱ. 청년 수당 참여자 지원 및 관리 프로그램 운영	250천원*1회*12개월 = 3,000천원	
ㄴ. 금융·부채 경감 관련 컨설팅(자문)	200천원*8회*12개월 = 19,200천원	
ㄷ. 청년 지원 관련 프로그램 운영	300천원*8회*12개월 = 28,800천원	
4) 지역·권역별 청년 특화 사업	42,000천원	
ㄱ. 지역 수요 조사를 위한 간담회 개최	1,000천원*2회 = 2,000천원	
ㄴ. 권역별/분야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10,000천원*4회(분기별) = 40,000천원	
5) 청년 매니저 양성 과정 운영	38,000천원	
ㄱ. 분야별 청년 매니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500천원*4회*12개월 = 24,000천원	
ㄴ. 현장 견학 및 워크숍, 세미나 개최	2,000천원*4회(분기별) = 8,000천원	
ㄷ. 전문 자격 취득 지원	300천원*20명 = 6,000천원	
6) 지역 자원-단체 연계 체제 구축	13,714천원	
ㄱ. 청년 관련 지역 공공기관 간담회 개최	500천원*4회(분기별) = 2,000천원	
ㄴ. 민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설명회	10,000천원*1식 = 10,000천원	
ㄷ. 공공·민간 기관과 청년 단체 간 협약 체결	1,714천원*1회 = 1,714천원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156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동대문구 지역청년들의 역량강화,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지역연계 특화 사업 운영 및 청년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공용공간의 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 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제20조, 「서울특별시 청년 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조에 따라
- 다. 청년사업, 공간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시 설 명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구」 운영	
위 치 · 규 모	동대문구 전농동 588-1(지상3층), 476m ²	
지 원 시 설	코워킹 스페이스, 휴게공간, 공유부엌, 상담실, 회의실	
위 치 도		

나.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3년
- 위탁업무 :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동대문 시설 관리·운영 일체
 - ① 청년역량 강화 사업
 - 청년활동 전문 분야별 직무 노하우 공유 및 학습교육
 - 지역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년 이슈 연구실행 지원
 - ② 청년커뮤니티 활성화
 - 청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지역 청년 커뮤니티 모집 및 활동 지원
 - ③ 청년센터(Y.C : Youth Center) 기능 수행
 - 청년 지원 사업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종합 상담 지원
 - 공공정책 서비스에 연결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 집적 및 안내
 - 지역 특화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청년 지원 전문 인력 청년 매니저 양성
 - 지역 기성자원(주민센터, 복지관)·청년단체 등 민간자원연계 체계 구축 등
 - ④ 무중력지대 동대문 시설 관리·운영
 - 건축물 시설 관리·운영
 - 사무기기 및 비품 구매·관리
 - ⑤ 무중력지대 홍보 사업
 - 무중력지대 동대문 사업 홍보 및 홍보물 제작
- 소요예산 : 490백만원('20년도 예산편성 추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위탁)

다. 민간위탁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민간의 창의적 프로그램 운영과 노하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장의 수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 청년공간 설치·운영에 대한 민간의 경험에 기반하여 민간 자원과의 적극적 연계 협력을 추진,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탁운영 등)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편성 추진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청년청 청년공간운영팀 김수정(☎ 2133-6585)